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은경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조례 제정(2015.11.16.) 이후 「아동복지법」이 여러 차례 개정됨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하여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용 및 오산시 아동권리 ombuds퍼슨의 자치법규 검토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며,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오산시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기본조례로 만들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용어의 정의에 “아동영향평가”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ombuds퍼슨”의 정의를 구체화함(안 제2조).

- 나.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안 제3조제2항).
- 다. 아동친화도시 “구성 기준”을 “구성 원칙”으로 변경하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기본원칙의 내용을 인용해 개정함(안 제4조).
- 라.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구성계획의 내용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신설함(안 제5조).
- 마.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아동권리 실태조사,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예산의 확보 및 분석, 권리 보장 사업을 신설하고, 참여보장, 안전조치, 아동 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보완함(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 바.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변경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 위원회 구성 : 15명 이내 → 20명 이내
 - 부위원장 : 부시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자격에 관련기관(경찰서, 교육지원청) 종사자 및 아동 대표 추가
 - 위촉직 위원 임기 : 3년 / 연임(제한없음) → 2년 / 한 차례만 연임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 신설
 - 위원회 정기회의 : 연 1회 개최 → 연 2회 개최
- 사.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부칙 제2조),
- 종전의 “어린이 의회”, “청소년 의회”를 “어린이·청소년 의회(아동 의회)로 통합
 - 의회구성 : “어린이 의회”, “청소년 의회” 각 40명 이내 → 100명 이내
 - 기능강화 : 아동권리에 대한 의견제시, 아동의회 기획사업 추진, 행사 참여 신설

- 상임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시의회의 지원, 운영계획수립 삭제
- 포상 관련 근거 신설
- 아. 아동정책 업무추진단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章)’으로 규정하고, 그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 자. 아동권리 ombuds퍼슨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章)’으로 규정하고, 그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개정함(안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 ombuds퍼슨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완하고, 실효성 없는 위촉 제한에 관한 내용 삭제
 - 임기 : 2년 / 한 차례만 연임 → 2년 / 연임(제한없음)
 - 임기만료 전 해촉 사유 명시(신설)
- 차.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章)’으로 규정하고,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44조부터 46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3월 4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은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456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25일

발의의원 : 한은경 의원

찬성의원 : 김명철, 이상복,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조례 제정(2015.11.16.) 이후 「아동복지법」이 여러 차례 개정됨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하여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용 및 오산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자치법규 검토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며,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오산시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기본조례로 만들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용어의 정의에 “아동영향평가”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옴부즈퍼슨”의 정의를 구체화함(안 제2조).
-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안 제3조제2항).
- 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조성 원칙”으로 변경하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기본원칙의 내용을 인용해 개정함(안 제4조).

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조성계획의 내용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신설함(안 제5조).

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아동권리 실태조사,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예산의 확보 및 분석, 권리 보장 사업을 신설하고, 참여보장, 안전조치, 아동 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보완함(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변경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 위원회 구성 : 15명 이내 → 20명 이내
- 부위원장 : 부시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자격에 관련기관(경찰서, 교육지원청) 종사자 및 아동 대표 추가
- 위촉직 위원 임기 : 3년 / 연임(제한없음) → 2년 / 한 차례만 연임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 신설
- 위원회 정기회의 : 연 1회 개최 → 연 2회 개최

사.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부칙 제2조),

- 종전의 “어린이 의회”, “청소년 의회”를 “어린이·청소년 의회(아동 의회)로 통합
- 의회구성 : “어린이 의회”, “청소년 의회” 각 40명 이내 → 100명 이내
- 기능강화 : 아동권리에 대한 의견제시, 아동의회 기획사업 추진, 행사 참여 신설
- 상임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시의회의 지원, 운영계획수립 삭제
- 포상 관련 근거 신설

- 아. 아동정책 업무추진단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章)’으로 규정하고, 그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 자. 아동권리 ombuds퍼슨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章)’으로 규정하고, 그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개정함(안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 ombuds퍼슨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완하고, 실효성 없는 위촉 제한에 관한 내용 삭제
 - 임기 : 2년 / 한 차례만 연임 → 2년 / 연임(제한없음)
 - 임기만료 전 해촉 사유 명시(신설)
- 차.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章)’으로 규정하고,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44조부터 46조까지).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1
 - 「아동복지법」 제4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제3조 제6조, 제12조, 제19조, 제27조
 -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기본원칙
 - 아동의 4대 권리
- 현행조례
 -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 별첨2
 -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별첨3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산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 나. 보호권 : 각종 위협,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

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보호·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 “아동영향평가”란 오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성별, 언어, 인종, 종교, 나이, 신체조건, 장애여부, 경제상황,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교육, 의료, 놀이, 여가·문화생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구성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아동 정책제안 등 아동의 요구가 있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성계획 수립 시 아동을 포함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

제6조(아동의 참여 보장) ①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참여기구를 통해 아동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권리 실태조사)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

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및 공무원,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등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해야 한다.

제9조(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3.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4.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실시

제10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원·녹지·아동 관련 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11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 권리 모니터링) ① 시장은 아동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권리 모니터링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예산의 확보 및 분석) 시장은 아동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매년 그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아동 권리 보장) 시장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2. 어린이날, 세계 아동의 날 등 아동 관련 기념일 축하 행사
3. 기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7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대한 이행 사항 점검 및 성과평가
4. 제44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아동건강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3. 관할 경찰서 아동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4. 관할 교육지원청 아동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5. 아동 보호자 대표
6. 아동 시정참여 활동 경험이 있는 아동 대표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2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어린이·청소년 의회

제27조(어린이·청소년 의회 설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참여기구로써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이하 “아동 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아동의회 의 기능) 아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 과 관련된 행사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아동의회가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29조(아동의회 의 구성) ① 아동의회 의원(이하 “아동의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아동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아동의원 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의원은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학교별 1명씩 학교장의 추천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아동 중 지역·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의원의 심사·선정 방법 등 아동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아동의원 임기 및 해촉) ① 아동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의원이 건강, 학업 등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그 밖에 아동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아동의회 회의) ① 아동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아동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아동의회 지원) 시장은 아동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원 배지·단복 등

2. 역량강화 교육 및 체험·견학 활동
3. 그 밖에 아동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아동의회에서 제안하는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아동의원에 게 「오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장 아동정책 업무추진단

제35조(아동정책 업무추진단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정책 업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제36조(추진단의 구성) 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국장,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7조(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의견 조정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3.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안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모니터링 사항 및 아동참여기구 제안사항 검토
5. 그 밖에 아동정책 등 제도발전 개선방안 제시

제38조(추진단의 회의) 추진단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7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39조(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설치)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하여야 한다.

제40조(옴부즈퍼슨의 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태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태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오산시의 아동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제언

제41조(옴부즈퍼슨의 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관련 학과 교수
 3. 아동 인권 관련 분야에서 조사·구제 등 대변인 역할의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지역사회 실정에 밝은 활동가
-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2조(옴부즈퍼슨의 해촉) 시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옴부즈퍼슨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옴부즈퍼슨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고 인정되는 경우

제43조(옴부즈퍼슨 활동수당) 시장은 옴부즈퍼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옴부즈퍼슨 활동수당 지급기준표에 따라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아동영향평가

제44조(아동영향평가)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및 사후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의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제45조(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 ① 시장은 제44조의 아동영향평가를 위하여 해마다 성별, 연령별,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아동영향평가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6조(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①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어린이의회 및 청소년의회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로 본다.

제4조(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어린이의회 및 청소년의회의 의원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으로 본다.

[별표]

옴부즈퍼슨 활동수당 지급기준표(제43조 관련)

(단위:월액/원)

지급기준	활동수당
옴부즈퍼슨 / 명	500,000원

【별첨1】

관계법령 발췌서

「아동복지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 1 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 2 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 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 19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

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 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 27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여건과 재정의 범위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기본원칙

1. 비차별의 원칙

모든 아동은 본인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 및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아동이 필요한 보호를 받도록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생존과 발달의 권리

모든 아동의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4.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

본인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견해는 본인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정당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 아동의 4대 권리(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 생 존 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건강을 위하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2. 보 호 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분,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 달 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4. 참 여 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별첨2 현행조례】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5년 11월 16일 조례 제1436호
일부개정 2016년 11월 14일 조례 제1533호
일부개정 2018년 4월 16일 조례 제16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오산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16>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로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할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
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할 것
6. 장애아동은 인격을 존중받고 자립하여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할 것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아동들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 수용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 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아동 참여보장) ①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14]

제8조의3(아동권리 모니터링)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환경 등을 감시와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8. 4. 16>

1.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아동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퍼슨이 될 수 없다. <신설 2018. 4. 16>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8. 4. 16>

1. 아동권리 침해사항 조사·구제 및 개선안 제안
2. 행정 감시활동과 행정 개선을 위한 여론 취합 및 법령 등의 개정 제안

⑤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6>

⑥ 옴부즈퍼슨은 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임기 내에 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6>

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에게 별표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6>

[본조신설 2016. 11. 14]

제8조의4(아동영향평가)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폐지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 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1. 오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2.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14]

제8조의5(아동정책 업무추진단 설치) ① 시장은 아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아동정책 업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담당 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정책관련 부서장이 된다.

④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및 정책 관련부서 의견조정
2. 아동의견 검토 및 추진상황 보고
3. 아동권리 ombudsman의 제안사항 반영 및 정책발굴 검토
4. 그 밖에 아동정책 등 제도 발전·개선 방안 제시

⑤ 추진단은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6]

제9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아동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제공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어린이날 행사 등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18. 4. 16>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양한 계층·지역 또는 아동 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교육국장 및 아동친화도시 업무 과장으로 한다.

1. 사회복지·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2.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3. 학부모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 대표자
4. 시의원
5.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13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
동친화도시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한다.

제18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4 조례 제1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6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18. 4. 16>

활동수당 지급 기준표(제8조의3제6항 관련)

(단위:월액/원)

지 급 기 준	활 동 수 당
음부즈퍼슨 / 명	500,000원

[별첨3 현행조례]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7년 4월 18일 조례 제15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체험을 통하여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의회”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오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시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시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의원 정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수를 각각 4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한다.

제4조(구성) 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 중 각 학교별로 1명씩 추천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 중 각 학교별로 1명씩 추천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

제5조(기능)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는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는 동시에 만료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경제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배정을 10명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상임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임시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장소는 시의회의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오산시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의 지원 등)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배지·단복 등 지원
2. 국회 등 견학 활동
3.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시의회의 지원 등) ① 시의회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의회는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장소로 본회의장 등 회의장 사용을 지원한다. 다만,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안전 심의 등 모의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 등

제14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